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856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8563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533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피고, 피상고인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판결 선고2022. 2. 17.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나533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1항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이나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결산기를 이 사건 호텔의 준공 시점으로 정하여 그 시점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종료 또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확정된 피담보채무의 변제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이나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주심대법관노태악

대법관오경미